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788호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공 고

○ 공 고 제 9 8 2 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실시계획 및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 로 과	2
○ 공 고 제 9 8 9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 통 행 정 과	4
○ 공 고 제 9 9 5 호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보 육 정 책 과	14
○ 공 고 제 1001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복 지 정 책 과	19
○ 공 고 제 1002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복 지 정 책 과	28
○ 공 고 제 1006호	공인 등록 공고	민 원 봉 사 과	39
○ 공 고 제 1008호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여 성 가 족 과	41
○ 공 고 제 1009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48
○ 공 고 제 1010호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여 성 가 족 과	49

고 시

○ 고 시 제 6 0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61
---------------	-----------------	-----------	----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982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게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계획 및 자료제출 통보 공문을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11.

남 동 구 청 장

1. 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대상업종 (등록번호)	공고내용	요청근거
(주)더이음건설 (임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19, 303호 (논현동)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인천남동21-05-01)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주식회사 태화건설 (임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39번길 72-20 4층 (논현동)	지반조성·포장공사 (교양2019-02-01) 철근·콘크리트공사 (교양2019-09-01)		
도시공간연구소 (김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802호 (구월동)	실내건축공사 (인천남동21-01-14)		
(주)엔지오기업장애인협회 (김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50, 202호 (구월동)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인천남동21-06-02)		
(주)진안건축 (안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70번길 42 102호 (간석동)	철근·콘크리트공사 (인천남동19-09-05)		
주식회사이엘테크 (박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39 701호 (구월동)	승강기·삭도공사 (교양2020-22-01)		
(주)가온미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354번길 27 1층 (만수동)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인천남동19-03-02)		

2. 공고기간 : 2023년 5월 11일 ~ 2023년 5월 26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2023년 5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및 제83조(등록말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로과 담당자(032-453-2716)에게 문의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989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5.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남동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및 신설하고, 주차장 개방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개정(안 제5조제9호)
-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 신설(안 제5조, 제13호)
- 보조금의 지원방법 개정(안 제28조)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8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 연 락 처 : ☎ 453-2683, FAX 453-289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 주차장 개방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개정 : (안 제5조제9호)
-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 신설 : (안 제5조제13호)
- 보조금의 지원방법 개정 : (안 제28조)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8 개정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본문 중 “1.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13.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2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보조금 등의 지급기준(제28조 관련)

1. 내집안 주차장 설치 비용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의무유지기간
대문·담장 철거 후 주차장(경형·일반형) 설치 시	· 담장(대문) 철거 · 주차면 조성, 조경시설 · 개방형(수목)담장, 투시형 대문 · 방법시설(방법창, 현관문, 무인방법시스템)	5년
아파트 내 추가 주차장 설치 시	· 주차 노면 정비 : 주차장 포장보수, 주차구획 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경계석, 휠스, 조경시설 등)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 방법시설	5년

2.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 비용 지원

대 상	지 원 내 용	의무개방기간
주차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건축물	· 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휠스 등) ·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기타 시설물 · CCTV 설치비용 및 방법시설 ·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2년
기존 개방 건물 추가보조 (보조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	· 주차구획정비 · Car Stopper설치 · 주차장 포장 등의 시설보수 비용	2년
○ 기준개방시간 : 평일·토요일 19시~익일 7시 30분, 일요일·공휴일 24시간 ○ 개방시간은 건축물 사용(또는 영업)시간 외 유희시간에 따라 남동구청장과 협의로 조정 가능 ○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3. 학교 부설주차장 비용 지원

대 상	지 원 내 용	의무개방기간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시 (소규모 주차장 추가설치 포함)	기존 주차장 개방 시설개선비용 또는 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비용 최대 20,000만원 범위 내 지원 ○ 기준개방시간 : 평일·토요일 19시~익일 7시 30분 일요일·공휴일 24시간 (※ 개방시간은 남동구청장과 협의로 조정 가능)	5년
학교 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시	공영주차장에 준하여 운영될 주차장 건설비용 100% 범위 내 지원	20년
○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12.23.)	② ----- ----- ----- ----- ----- ----- ----- ----- ----- ----- -----
1. 1. 주차장에 따라 주차 개시시간의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주차관제시스템에 주차 개시를 자진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다만, 이때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를 기준으로 1시간이 초과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며,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	1. 주차장----- ----- ----- ----- ----- ----- ----- ----- ----- ----- -----

다. (전부개정 2021.12.23.)

2. ~ 9. (생략)

③ (생략)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
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
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
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 8. (생략)

9. 구 주민등록 거주자 중 두 자
녀를 양육하는 경우 100분의 3
0 감면,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각각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등
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
하여야 함

10. ~ 12. (생략)

<신설>

2.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

1. ~ 8. (현행과 같음)

9.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
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10. ~ 12. (현행과 같음)

13.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
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
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 11 -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995호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5.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 참여자에게 센터 홍보물을 제공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활성화하고 가정육아 활성화를 도모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의 조정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보육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8361, FAX453-58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5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 참여자에게 센터 홍보물을 제공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활성화하고 가정육아 활성화를 도모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의 조정 :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육아지원과-10647(2021.10.19.)
<2021년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변경사항 안내>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수행 시 참여자에게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센터의 기능) (생략) <신설>	제9조(센터의 기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수행 시 참여자에게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001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5.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장학금 지급대상의 명확화(안 제10조제5호)
-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 따른 대상 명기(안 제1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 연 락 처 : 전화 453-2505, FAX 453-25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장학금 지급대상의 명확화(안 제10조제5호)
-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 따른 대상 명기(안 제12조제1항)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별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조제5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은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 등에서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13조제1호 중 “학생”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생 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저소득주민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 ----- ----- ----- -----.
제10조(사회복지사업) 제4조제1항 제1호의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사회복지사업)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수급자</u>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5. <u>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1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10조제5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u>수급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 등에서</u>	제1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제10조제5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은 <u>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현행	개정안
<u>우수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다.</u>	<u>으로 한다.</u>
② (생략) 제13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u>학생</u>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동장이 추천한 <u>학생</u>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1. <u>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 등에서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u>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학교 밖 청소년</u>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장학생의 선발) ----- ----- --. 1. ----- ----- ----- <u>사람</u>----- -----. 2. ----- ----- <u>사람</u> 중----- -----.

[참고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4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조례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 - 1002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50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 따른 정비
(안 제3조제2항, 별지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 연 락 처 : 전화 453-2505, FAX 453-25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 따른 정비
(안 제3조제2항, 별지서식)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의 중학생·고등학생”을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로, “학생으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장”을 “학교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으로, “받은 학생”을 “받은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학생”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생을”을 “사람을”로, “가정의 학생”을 “가정”으로, “학생 순”을 “사람 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생”을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2.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남,여)	보호자와의관계	
학 적	☐ 유 학교 학년 반 (과)		
	☐ 무		
3. 장학구분 : ① 성적장학생(), ② 특기장학생(), ③ 모범장학생()			
4. 가구특성 및 재산사항 등			
중증장애 세대여부	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 중복장애등()	대상자와의 관 계	
소득인정액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 계좌번호 : 은행명(), 번호(), 예금주()			
첨부 1. 성적장학생 : 성적증명서 2. 특기장학생 : 입상 상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3. 모범장학생 : 학교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 추천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대상자를 ()년도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동장(직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학교장(청소년복지시설장) 추천서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시설명)			
추천분야			
추천사유			

작성자 : (인)

년 월 일

000 학교장(청소년복지시설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

○○ 동 행정복지센터

[illegible]

※ 작성요령

- ① 추천서는 소득인정액이 낮은순으로 작성
- ② 성적장학생의 ‘성적점수’란은 성적증명서, 특기장학생의 ‘상장 또는 추천서’란은 상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모범장학생의 ‘추천서’란은 학교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추천서를 확인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장 학 증 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장학생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년도 ()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신청자격) ① (생략) ② 장학생 신청자격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학생으로</u> 한다. 1. 2. (생략) 3. 모범장학생 : 선행, 효도,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어 <u>학교장</u> 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신청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 ----- <u>사람으로</u> ----- ----- 1. 2. (현행과 같음) 3. ----- ----- <u>학교장</u> <u>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u> ----- ----- 받은 청소년
제6조(추천 및 선발) ① 제5조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u>학생을</u>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u>학생</u> 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추천인원이 지급대상자의 인원수를 초과하	제6조(추천 및 선발) ① ----- ----- ----- ----- ----- <u>사람</u> ----- ----- ----- ② ----- <u>사람</u> 을 ----- ----- -----

현행	개정안
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가정, 소득이 적은 가정의 학생, 학업성적 또는 입상성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발한다.	----- ----- 가정----- ----- 사람 순----- -.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 사 람-----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006호

공인 등록 공고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남동구청장

- 공인 등록 사유 : 통합증명발급기 추가 설치에 따른 공인 등록
- 공인 최초사용일 : 2023. 5. 22.
- 등록 공인 수 : 4개
- 등록 공인 내역

연번	구분	기 관 (부서명)	공인명	인영	서체 및 규격(cm)
1	신조 공인	구월3동	남동구청장인 (구월3동 통합민원4)-종		고인체 3.0cm x 3.0cm
2	신조 공인	구월3동	남동구청장인 (구월3동 통합민원4)-형		고인체 3.0cm x 3.0cm

연번	구분	기 관 (부서명)	공인명	인영	서체 및 규격(cm)
3	신조 공인	구월3동	구월3동장인 (구월3동 통합민원4)-중		2.4cm x 2.4cm 고인체
4	신조 공인	구월3동	구월3동장인 (구월3동 통합민원4)-형		2.4cm x 2.4cm 고인체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008호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6.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및 구민참여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 조항 정비 : (안 제10조제3항)
-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 마련 : (안 제14조제3항)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구성 기준 정비 : (안 제20조제3항)
-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해촉 기준 정비 : (안 제28조제4항제3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863,
FAX453-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범죄취약가구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및 구민참여단의 구성 기준 정비를 통해 구민참여단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주요내용

-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 조항 정비 : 안 10조제3항
-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 마련 : 안 제14조제3항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구성 기준 정비 : 안제20조제3항
-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해촉 기준 정비 : 제28조제4항제3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직관리”를 “보직 관리”로, “남녀평등”을 “성평등”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를 “공무원의 성별 균형적 인사관리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제공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및 점포,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자

2.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의”를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민참여단”을 “구민참여단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중 “품위손상 등”을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미참여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 ----- ----- ----- ----- -----.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u>남녀평등</u>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u>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u>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보직 관리</u> ----- - <u>성평등</u> ----- ----- <u>공무원의 성별 균형적 인사관리를</u> -----.
제14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② (생략) <신설>	제14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u>물품 및 서비스 제공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제20조(구성) ①·②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각 국장과 보건소장

2. 3. (생략)

제27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구민참여단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2. (생략)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구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남동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및 점포,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자

2.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 위촉한다.

<삭제>

1. 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27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민참여단은 -----

1. ~ 5. (현행과 같음)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미참여 등-----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23-1009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3. 05. 31.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3. 05. 16. ~ 2023. 05. 3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2020-0202750	하늘푸드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6번길 35, 청수타워 1층 133호(서창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3-05-12	2023-05-31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3. 5. 30.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5

2023. 5. 16.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010호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6.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위원회 설치 (안 제4조,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의 설치·운영, 위탁 등 (안 제6조, 제7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 제8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여성가족과
 - 연 락 처 : 전화 453-5993, FAX 453-58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 (안 제6조, 제7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 제8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60조의3
-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센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참고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9., 2021. 9. 24.>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9. 24.]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기능)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6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12.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 140-34 (고잔동)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 8-3 (만수동)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 140-34 (고잔동)	2009.11.16.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05.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능허대로625번길 140-3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40-34를 건물번호로 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동로 8-3 (만수동)	2023.05.12.	건축물대장말소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동로 8-5 (만수동)	2023.05.12.	건축물대장말소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04-4 (구월동)	2023.05.12.	건물없음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로60번길 17 (수산동)	2023.05.12.	건물없음	